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5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온라인 마약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I. 개요

1.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업무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치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온라인 마약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마약류 관련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정보(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u>따라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202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2024년 23,022명, 2025년 23,403명으로 2023년 이후 2만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다크웹(Darkweb)¹⁾이나 텔레그램 등 인터넷·SNS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1) 다크웹(Darkweb)이란 사용자가 익명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접속정보(IP 주소, 데이터 흐름 등)를 소프트웨어(Tor 또는 I2P 등)를 통해 암호화한 후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서, 인권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는 은어·줄임말·이미지 등이 활용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위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계기관 간 기능 및 권한 분담을 고려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대상 정보인 안제3조제1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정보에는 단순한 마약류의 안전관리 문제를 넘어 불법 반입·제조된 마약류의 판매·알선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유통 방지에는 불법정보의 심의·차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조요청 및 형사수사·단속 등이 함께 수반될 수 있음.
- 그런데 불법정보의 심의·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의 밀수·판매·유통에 대한 수사·단속은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은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마약류의 판별과 위해성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에 관계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떠한 협력업무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현행 법령상 의무 또는 자체 이용정책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불법정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은 현행 법령상 의무를 넘어 별도의 인력·기술·시스템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추가적인 협력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대한약사회) 최근 청소년 및 20·30세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적·선제적 차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임. 이에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4